

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

제정	2001. 9. 1.	규칙 제350호
개정	2003. 6.27.	규칙 제401호
	2010. 3.10.	규칙 제529호
	2011.11.15.	규칙 제576호
	2013.10.25.	규칙 제633호
	2015. 6.25.	규칙 제67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0.25>

제1조의2(연구교수의 구분) ① 연구교수는 과제연구교수와 자율연구교수로 구분하고, 과제연구교수는 국내연구교수와 국외연구교수로 구분한다.

② 과제연구교수는 국내·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구결과의 게재나 출판의 의무가 부과되는 연구교수를 말한다.

③ 자율연구교수는 국내·외에서 연구한 결과의 게재나 출판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연구교수를 말한다.

제2조(자격) 연구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본교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
2. 정년퇴직까지 재직 잔여연수가 5년 이상인 자
3. 최근 5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국내·외 여행(파견, 교환, 휴직 포함)을 한 사실이 없는 자(1년 연구교수)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동 사실이 없는 자(6개월 연구교수)
4. 최근 2개 학기 동안 강의 책임시수를 초과한 자
5. 3년 평균 전임교원업적평가 점수가 120점 이상인 자(과제연구교수에 한함)
6.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3조(선발) ① 연구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 학과장과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연구교수 지원신청서(별지1호 서식, 별지5호 서식)를 [산학협력단장](#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[산학협력단장](#)은 교학처장과 협의를 거쳐 대학 운영상 지장이 없는 자를 다음 학기 개시 5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③ 연구교수는 제2항의 추천자 중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[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](#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④ 연구교수로 선발된 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연구교수 선발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자
2. 연구교수 선발 이후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자
3.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은 [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](#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4조(선발제외) ① 연구교수 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연구비를 지원받고 기한 내에 연구비 정산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.

② 연구교수 선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선발에서 제외한다.

제5조(기간) 연구교수의 연구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.

제6조(인원) 연구교수의 수는 전임교원 정원의 10% 이내로 한다.

제7조(평가기준) 과제연구교수 선발 평가는 <별표 1>에 의해 평가하고, 자율연구교수 선발 평가는 <별표 2>에 의해 평가한다.

제8조(연구계획서의 변경) 연구교수가 부득이 당초의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 종료 3개월 전까지 별지 4호 또는 별지 7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신분 및 처우) ①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② 과제연구교수에게는 평상 근무시의 보수와 제 수당을 지급한다.

③ 자율연구교수에게는 연구결과의 게재나 출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, 각종 교내 연구비 지원신청을 제한하고 기성회계 정액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복무) ① 연구교수는 타 기관에 출강할 수 없으며, 정부, 공공기관, 기업체 등에서 상임 근무할 수 없다. 다만, 전공이나 담당 교과목과 관련된 국내·외 타 대학교, 연구기관, 학술단체, 체육단체에서의 연구와 특강은 제한하지 않는다.

② 총장은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연구중인 연구교수에게 5학점 이내에서 본교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③ 연구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(별지2호, 별지6호 서식) 및 연구교수 연구비 집행내역서(별지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연구기간의 2배 이상을 본교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10.25>

④ 과제연구교수의 연구실적물은 한국연구재단등재(후보)지는 1년 이내에, SCI(SSCI)급이나 SCIE(SSCIE)급의 국제전문학술지에는 2년 이내에 게재하거나 저서로 출판하여야 하며, 개인발표회로 대체할 경우 발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교수에 대하여는 향후 본교 학술연구비, 해외장기연수 및 연구교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며, 해당교수는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

⑥ 과제연구교수가 게재하는 논문의 첫 장 여백 또는 저서 등에 “이 ○○는 해당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연구교수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”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비) 과제연구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국내연구자, 국외연구자로 분류하여 지원하되, 6개월 과제연구교수에게는 연구비의 50%를 지급한다. 다만, 기간연장에 따른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취소) 연구교수가 신청서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에 총장은 [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](#) 심의를 거쳐 연구교수 선발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(제350호, 2001. 9. 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. 9.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연구교수 규정은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중 제2조 제1항의 정년퇴임 근무잔여년수 적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2001년 1년 이상, 2002년 2년 이상, 2003년 3년 이상, 2004년 4년 이상, 2005년 5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제6조 중 평가기준란의 교수업적점수는 2003. 1학기 연구년제 교수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401호, 2003. 6. 27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학년도 연구교수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529호, 2010. 3. 1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576호, 2011. 11. 1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제633호, 2013. 10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674호, 2015. 6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과제연구교수 선발 평가표

구 분	점 수	평 가 기 준					
본교 재직년수 (과제연구교수 기 수혜자는 과제연구교수 이후부터 계산)	20	20년 이상	17년 이상	14년 이상	11년 이상	8년 이상	5년 이상
		20	17	14	11	8	5
연구실적(등재후 보지 이상 논문게재실적: 최근 3년간)	10	300%이상	200%이상	100%이상		100%미만	
		10	7	4		0	
전임교원 업적평가 점수	30	(연구업적점수/지원자 중 최고점수) × 50 * 이론, 전문실기를 구분해 평가함. * 3년 평균 업 적평가점수 적용					
과거 10년간 연구교수 수혜 회수	10	없음			1회 이상		
		10			5		
심사위원 평가점수1 (연구계획서 점수) [최고,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평균: 이하 동일]	10	A	B	C	D	E	
		10	8	6	4	2	
		연구계획의 적합성(2점), 창의성(2점), 논리성(2점), 연구방법의 타당성(2점), 학문발전 및 기여 가능성 (2점)					
심사위원 평가점수2 (교내 봉사활동이나 위원회/TF팀 활동 실적: 최근 3년간)	10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10	8	6	4	2	
심사위원 평가점수3 (근무의 성실성과 복무 자세: 최근 3년간)	10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		10	8	6	4	2	
합 계	100						

<별표 2>

자율연구교수 선발 평가표

구 분	점 수	평 가 기 준				
		20년 이상	17년 이상	14년 이상	11년 이상	8년 이상
본교 재직년수 (8년 미만 0점)	20	20년 이상	17년 이상	14년 이상	11년 이상	8년 이상
		20	16	12	8	4
교내 연구과제 수혜 회수(최근 3년간)	20	없음	1과제	2과제	3과제	4과제 이상
		20	16	12	8	4
연구년제 교수 수혜 회수(재직 기간)	20	없음	1회	2회	3회	4회 이상
		20	16	12	8	4
심사위원 평가점수1 (교내 봉사활동이나 위원회/TF팀 활동 실적: 최근 3년간) <small>[최고,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평균: 이하 동일]</small>	20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	20	16	12	8	4
심사위원 평가점수2 (근무의 성실성과 복무자세: 최근 3년간)	20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		20	16	12	8	4
합 계	100					

(별지1호 서식)

과제연구교수 신청서

신청자 인적사항	소속	직급	학과	성명		
	전공	담당과목		최초발령	년	월
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국내·외 여행 (제2조 3항)	기간 (~부터 ~까지)	장소		최근 2학기 강의 시수	20 학년도 제 1 학기	20 학년도 제 2 학기
					주당 시간	주당 시간
등재후보지 이상 연구실적 (최근 3년간)	총 %			과거 10년간 연구년제교수 수혜 회수	총 회	
교내 봉사활동, 위원회/TF팀 활동 실적* (최근 3년간)	총 회 (증빙서류는 첨부 제출)			교내 상벌 현황* (최근 3년간)	총 회 (증빙서류는 첨부 제출)	
연구년 기간	. 학기 ~		. 학기 (총 학기)			
연구년 장소	국내		국외		비고	
연구 주제						
연구 내용						

붙임 1. 연구계획서 1부(국외연구교수는 파견연구기관의 초청장과 공동연구자와의 공동연구계획서 및 공동연구수락서 포함)

2. 위 별표(*) 기재사항 등의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1부. 끝.

이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규정에 따라 과제연구년제 교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 학과장 : (인)
 학장 : (인)
 교학처장 : (인)

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

(별지1호서식 붙임자료1)

과제연구교수 연구계획서

1. 연구 과제명 :
2. 연구의 필요성 :
3. 연구의 목적 :
4. 연구방법 및 내용 개요 :
5. 연구일정 및 세부계획 :
6. 소요경비의 부담 방법
 - 가. 본인 부담액 :
 - 나. 외부(개인 또는 기관, 단체 등)지원액
 - 다. 대학지원액 :
 - 라. 합 계 :
7. 소요예산 산출내역(서식 : 별첨)
8.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:
9. 기타 참고사항

(별지1호서식 붙임자료2)

항 목	금액단위 (단위:천원)	산출기초(단위:원) <예시>	비고
①인건비적경비 (%)		· 연구보조원수당	
②연구활동 경비 (%)		· 연구활동비 · 연구회의비 · 여비	
③직접성 경비 (%)		· 조사연구비 · 문헌 및 재료구입비 · 장비사용료(임차료) · 연구기기비 · 논문게재료 및 특허출원비	
④연구운영비 (%)		· 유인물비 · 공공요금 등 잡비	

(별지2호 서식)

과제연구교수 결과보고서

연구자	소속		직급		성명	
연구과제명	국문					
	영문					
외부연구비 지원 내역 (기관, 금액)				연구수행 장 소	기관명	
					연구부서	
연구기간	. ~ .			본교지원금	원	
연구결과 개 요						
연구결과의 활용 방안	학술면					
	경제 및 산업면					
게재학술지 (발표 사항)	학술지명				학술지등급 (KCI, SCIE, SCI)	
	권 호		발행년월일	. .	면수	
참고 및 건의 사항						

붙임 : 학술발표(게재 및 출판, 공연 등) 증빙자료 부

학년도 과제연구교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교수 : (인)

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

(별지3호 서식)

과제연구교수 연구비 집행내역서

소속		전공		직급		성명	
연구과제명							
연구장소							
연구기간	. . . ~ . . . (개월)			지원금액			
연구비 집행내역							
(단위 : 천원)							
항 목	집행계획액	집행액					
계							

년 월 일

연구교수 : (인)

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

(별지5호 서식)

자율연구교수 신청서

신청자 인적사항	소속	직 급	학과	성명	
	전공		담당과 목	최초발 령	년 월
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국내·외 여행 (제2조 3항)	기간 (~부터 ~까지)	장소	최근 2학기 강의 시수	20 학년 도 제 1 학 기	20 학년 도 제 2 학 기
				주당 시간	주당 시간
교내 연구과제 수혜 회수 (최근 3년간)	총 회		연구년제 교수 수혜 회수 (재직 기간)	총 회	
교내 봉사활동, 위원회/TF팀 활동 실적* (최근 3년간)	총 회 (증빙서류는 첨부 제출)		교내 상벌 현황* (최근 3년간)	총 회 (증빙서류는 첨부 제출)	
연구 기간	. 학기 ~ . 학기 (총 학기)				
연구 장소	국내	국외	비고		
연구 주제					
연구 내용					

- 붙임 1. 자율연구교수 연구계획서 1부(별지5호서식 붙임자료1)
 2. 위 별표(*) 기재사항 등의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1부. 끝.

이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에 따라 자율연구교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 학과장 : (인)
 학장 : (인)
 교학처장 : (인)

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

(별지5호서식 붙임자료1)

자율연구교수 연구계획서

소속 : _____ 직급 : _____ 성명 : _____

1. 연구 주제 :
2. 연구의 필요성 :
3. 연구 목적 :
4. 연구 내용 :
5. 연구 장소 :
6. 기대되는 연구성과 및 활용방안 :
7. 기타 사항

(별지6호 서식)

자율연구교수 연구결과보고서

연구교수	소속		직급		성명	
연구기간	. ~ .				연구장소	
연구활동 및 연구결과 개요						
연구결과의 활용방안	교내측면					
	학술측면					
참고 및 건의 사항						

붙임 : 증빙자료(연구자료, 수집자료 등. 해외 연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여권 사본 제출)

한국체육대학교 연구년제교수 규정에 따라 자율연구를 수행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교수 :

(인)

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

